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0. 16.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10. 2.

다. 회부일자 : 95. 10. 4.

라. 상정 및 의결

○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5.10.14.

•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10.16.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신청길)

가. 제안사유

1994. 8. 5. 오수·분뇨관련 영업의 청소 및 운반요금 조정 이후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요금을 현실화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 관련근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6항

다. 주요골자

- 분뇨수집·운반요금(처리수수료포함) 10ℓ당 127원을, 12.5%인상인 143원으로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포함) 기본요금 0.75㎡(750ℓ)이내 12,500원을 3.6%인상인 12,960원으로, 초과요금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00원을 4.1%인상인 937원으로 조정코자 함.(안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나 목)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백창기)

- 본조례의 개정은 현사회의 여러가지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 등 혐오업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불식시키고 주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분뇨관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구의 타6개 구청요금과 동일하게 분뇨수거 10ℓ당 143원, 정화조청소 기본금 0.75㎡(750ℓ)까지 12,960원,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청소과장 신청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작년도 분뇨수거 및 청소요금인상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토한 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여 평균 1%를 인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3.8%인상안이 제출되었는 바 주택과 인구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구로서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p>	<p>• 기존주택의 신축·개축 등을 통하여 재래식화장실을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시설은 지금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95년1차준공된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으로 성서택지지역은 현재 정화조청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6년 상반기중 2차시설이 준공되면 대곡·용산지구 등의 오수·정화조처</p>

질 의	답 변 요 지
	<p>리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게 됨으로써 점차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년 8월 요금인상시에도 대구시 타구에 비해 8개월 늦게 적은 폭으로 인상되어 사실상 타구에 비해 인상을이 저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서구는 인상공고중에 있으며 나머지 타구에서는 이미 연초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요금을 인상, 시행하고 있어 타구와 인상금액을 같이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구와 계약한 정화조회사에서 정화조 청소후 요금 징수시 청소원들이 계산서상 요금보다 과다하게 사례비 등을 징수해 가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례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구청에서의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듣는 사실로써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악한 후 사례 발생시에는 강력한 행정 지도 감독으로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는데 현재 이들의 인건비 지급 실태는 어떠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수거의 경우 운전기사 60만원, 수거원 4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화조청소의 경우 운전기사 100만원, 청소원 8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운전기사는 기능직공무원이며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평균 92만원정도로 상대적인 인건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분뇨수거·정화조청소 물량은 주택수와 인구수에 비례하는 바, 우리 구는 대구시 타구에 비해 보다 많은 물량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타구와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상은 시키되 인상율은 물량을 감안 수정을 요함(반대없음)
- 또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요금 이외의 부당사례비 징수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근절방법을 강구하여 반회보에 게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강력이 촉구하였음.

6. 수정안 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수 정 이 유	수 정 주 요 골 자
95.10.16 최종백의원	○ 금년도 물가인상 및 사회적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임금 등에 따른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주민서비스의 향상, 대행업체 등의 채산성을 고려할 때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요금인상율에 있어서는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에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어 하향조정 하였음.	○ 제11조 제1항 1호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43원(처리수수료포함)을 분뇨수집 10ℓ당 137원(처리수수료포함)으로 수정하며, 동조항 2호 정화조청소요금(처리수수료포함) 나.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을 나. 초과요금 : 0.75㎡(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15원으로 수정함.

- 조문대비표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반대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27원(처리수수료 포함)</p> <p>2. 정화조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p> <p>가. 기본요금 : 0.75㎡ (750ℓ)이내 12,500원</p> <p>나. 초과요금 : 0.75㎡ (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00원</p> <p>②~④(생략)</p>	<p>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43원(처리수수료 포함)</p> <p>2. 정화조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p> <p>가. 기본요금 : 0.75㎡ (750ℓ)이내 12,960원</p> <p>나. 초과요금 : 0.75㎡ (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37원</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p> <p>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0ℓ당 137원(처리수수료 포함)</p> <p>2. 정화조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p> <p>가. 기본요금 : 0.75㎡ (750ℓ)이내 12,960원</p> <p>나. 초과요금 : 0.75㎡ (750ℓ)초과시 0.1㎡(100ℓ)마다 915원</p> <p>②~④(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43
----------	-------

제출년월일 : 95. 9.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안이유

사회의 여러가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인상되지 않고 종사원의 임금과 부대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정화조청소요금을 현실화하여 대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2.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6항

3. 주요골자

○ 분뇨관련영업요금 조정(안 제11조)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분뇨수집운반요금	10ℓ당	127원	10ℓ당	143원	
정화조청소요금	기본요금 : 0.75㎡당	12,500원	기본요금 : 0.75㎡당	12,960원	처리수수료 포함
	초과요금 : 0.75㎡ 초과시 0.1㎡ 900원가산		초과요금 : 0.75㎡ 초과시 0.1㎡ 937원가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43원(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가. 기본요금 : 0.75m³(750ℓ)이내 12,960원

나. 초과요금 : 0.75m³(750ℓ) 초과시 0.1m³(100ℓ)마다 937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의 요금)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27원(처리수수료 포함)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27원(처리수수료 포함)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43원(처리수수료 포함)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43원(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 포함)
가. 기본요금 : 0.75m ³ (750ℓ)이내 12,500원	가. 기본요금 : 0.75m ³ (750ℓ)이내 12,500원	가. 기본요금 : 0.75m ³ (750ℓ)이내 12,960원	가. 기본요금 : 0.75m ³ (750ℓ)이내 12,960원
나. 초과요금 : 0.75m ³ (750ℓ)초과시 0.1m ³ (100ℓ)마다 900원	나. 초과요금 : 0.75m ³ (750ℓ)초과시 0.1m ³ (100ℓ)마다 900원	나. 초과요금 : 0.75m ³ (750ℓ)초과시 0.1m ³ (100ℓ)마다 937원	나. 초과요금 : 0.75m ³ (750ℓ)초과시 0.1m ³ (100ℓ)마다 937원
②~④(생략)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